

“이의신청결정서 등” EDI 통보 안내

1. 추진 내용

- '07. 7월부터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에 “이의신청(재심사조정청구, 정산심사)결정서(MEDADR)”[이하 “이의신청결정서 등”이라 함] 포함되어 EDI 통보가 실시되었으나
 -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(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7-51호 : 2007. 6. 22) 제14조(전자문서)
- EDI 통보내역에 금액정산이 발생하는 이의신청 등의 인정내역 만이 수록되고 기각내역은 제외되어 통보됨으로써 요양기관의 활용성 미흡
 - 이에 현재 웹메일, 서면 통보서도 동시 발송중 ⇒ 통보의 중복으로 업무 효율성 저조
- 이에 따라 기각 내역도 포함되도록 EDI 통보서를 개선하여 요양기관의 활용성 제고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세부 내용

- 정산차수 2009-06-92차 ~ 2009-06-94차(2009. 6. 15 ~ 7. 6)
 - 요양급여비용 EDI청구기관 개선 “이의신청결정서 등 EDI” 시범 송부
 - 시범기간 동안 기존 송부되던 서면 및 웹 결정서 동시 송부
- 정산차수 2009-07-91차 ~. (2009. 7. 7~)
 - 요양급여비용 EDI 청구 요양기관 이의신청결정서 등 EDI '송부 실시